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자를 총칭함)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10357) 수리를 받은 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분에 대한 임대를 진행합니다.

■ 당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2년 08월 10일이며 이는 청약 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당해 주택의 모집공고, 청약, 당첨자발표 등 모든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와 임차인,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주 전 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에도 임대인(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금지사항 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무조건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합니다.

■ 당해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임차인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 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하며, 보증수수료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입주지정일부터 1년(매년 갱신)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료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에 의함	부담주체	임대인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
납부방법	임대인 청구 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		

■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②항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6항 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 조회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서 2021년 06월 15일 “임대주택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청약 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일반공급	2022.08.16.(화) ~2022.08.22.(월) (5영업일 간)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022.08.25.(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2022.08.26.(금) ~ 2022.08.30.(화) (3영업일 간)	분양사무실 106동 107호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분양사무실 : 우) 21368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25 (산곡동 180-183)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106동 107호

1.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공급 위치 및 공급 규모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25 (산곡동 180-183)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106동 민간 임대
▶ 공급 규모 및 내용 : 일반공급 분에 대한 임대 3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지하 3층 ~ 지상 23층 공동주택 10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구분	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2022950079	39A	39.50	19.8697	30.6939	90.0636	26.6134	일반공급	36	우선공급은 기존세입자 대상으로 공급 완료되었으며, 우선공급 세대 중 계약취소 세대는 일반 공급 전환 가능

• 2016.11.1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 부분은 임대인의 권리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 난방입니다.

▶ 임대기간

•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전세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타입	대상세대			임대보증금(전세형)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층	동	호수		계약 시	입주 시	
39A	1층	106	101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102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107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108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109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110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층	106	201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02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06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07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08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09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210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3층	106	301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02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06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07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08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09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310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층	106	401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02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06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07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08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09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410	225,000,000	22,500,000	202,500 000	

	5층	106	502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507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508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509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51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6층	106	602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606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607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610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⑥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①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당해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 금액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 중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2.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①항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 일반공급 (36세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tps://www.applyhome.co.kr)에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 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 신청 불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내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하며(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여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호의3, 제2조 제4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격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격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격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격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 검색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우선공급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 ①항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 되어 잇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다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류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 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국토교통부 전산 조회 시 무주택자가 아닌 자로 판명된 부적격자는 임대사업자가 그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 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당 사업시행자 검수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 시에도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일 이후 당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주택은 각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 공급 자격 등

▶ 일반 공급자 자격

구분	자격요건
일반공급(3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당해 주택은 각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유의사항
- 일반공급 대상자는 청약, 당첨자발표(호수 배정) 등 모든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기 일반공급 신청일의 17:30까지이며 이후에는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4.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자 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	접수 일자	당첨자 발표 일자
일반공급(36세대)	2022.08.16.(화) ~ 2022.08.22.(월) 5영업일간 09:00 ~ 17:30 인터넷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일 : 2022.08.25.(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원 (금 일십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신한,IBK기업,수협,농협,우리,SC제일,KEB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일반공급 대상자에 한하여 2022.08.25.(목) 16:00시 이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청약 접수 시 반드시 접수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인터넷 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금(10만원)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청약 시 ① 접속 :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민간임대/도시형생활주택 선택->청약 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서 조회 • 스마트폰 청약 시 : 스마트폰앱(“청약홈”검색) -> 접속 후는 PC청약 방법 참조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KB국민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 비 사 항</th></tr>
<tr><td rowspan="2">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사업주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 청약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전지점 방문을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 일반공급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당첨자 발표일 : 2022.08.25.(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tps://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5. 신청일정 및 장소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내 용		
일반공급	• 2022.08.26.~2022.08.30. 10:00 ~ 17:00 (3영업일간) • 장소 : 106동 107호 (추후 장소 변경 시 개별 안내)	본인 계약시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 영수증 등)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계약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호 ①항 2호 규정에 임대인이 임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액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동일)	상기 임대조건 호수 및 금액 확인 후 입금	241137-04-002713	KB국민은행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입금예시 106동203호 홍길동 -> **6-203 홍길동**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201,000원	1005-804257-517	우리은행	산곡 쌍용플레티넘 부평 ㈜푸른종합주택관리사무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어떠한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매월 임대료가 있을 경우 지정된 일자에 위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 월 임대료는 선납이며, 최초의 월 임대료는 입주 일정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며 추후 정해진 임대료 납부 일정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당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 관련 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재원 주택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 7억원이하 주택전세계약에 대한 전세보증금 80%이내 대출지원가능]
•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주택수가 1주택*(부부한산연소득 1억원이하인 경우한함)인 경우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억2천2백만원
• 대출금리 : 연3.58%~연4.78% (2022.03.25.기준, 신규6개월변동,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2년, 신용등급3등급기준)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임대인의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계약 및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임대인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 및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청약당첨자에 한해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인차인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입주 일정 안내

입주 지정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입주 일정 안내

- 입주 지정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 2022년 8월 25일(목) 당첨자 발표 이후 일반공급자 적격자에 한하여 잔금을 선납하신 당첨세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고,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계약 체결 시 안내한 납부 금액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확인하시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거 시(이사)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합니다.)
- 키불출 및 입주시 잔금 납부 영수증,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관리사무소 및 분양사무실에서 입금 확인이 되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해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입주 1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입주 일정을 통보 바랍니다.
- 토,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는 분은 입주 전 평일(10:00~16: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금 201,000원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전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일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지정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적용 연체요율	5%	해지

7. 유의사항 및 추가제공품목

▶ 일반 공통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 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주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 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 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 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 및 추가설치제공 품목
• 기본제공품목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가스쿡탑, 붙박이장(안방), 월패드
• 추가설치제공품목 : 임대주택 전세대. 각 실별 시스템에어컨[안방(벽걸이형), 거실(천정형)] 및 전동빨래건조대 설치 제공.

▶ 준공검사 확인 사항
• 2021년 12월 29일 준공검사 사용확인을 득하였으며, 계약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쌍용더플래티넘부평 현장참조
•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홈페이지 → 입주단지안내 (https://www.ssyapt.com/ko/sm/move_view.asp?vCode=P2010065&search=AREA&keyword=&page=1)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등록번호
임 대 인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대사업자등록 : 2021-부평구-임대사업자-103 법인등록번호 : 124271-0005123
시 공 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 : 120-81-01957 법인등록번호 : 1101111-0220395

▶상기 임대주택은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써 2021년 06월 15일 “임대주택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문의 : ☎070-4808-2563, 010-7133-880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 우)21368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25 (산곡동 180-183)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106동 107호
★ 당해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임차인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